

Introduction to the Reportable Conduct Scheme

Korean
Reportable Conduct Scheme

의무보고제(Reportable Conduct Scheme)

빅토리아주 의무보고제는 일부 조직들로 하여금 아동 학대 및 아동 관련 위법행위 혐의가 제기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아동 및 청소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아동 학대 및 아동 관련 위법행위 혐의에 대한 조직의 대응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 조직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기된 아동 학대 및 아동 관련 위법 혐의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 조직은 해당 혐의를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위원회는 조직이 해당 혐의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방식을 감독합니다.
- 조직, 단속 기관, 경찰, 아동 대상 근로자 신원 확인처(Working With Children Check) 및 위원회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조직은 모든 범법행위를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개입된 경우에도 조직은 조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시작해도 좋다고 허가한 다음에만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들이 보고 대상입니까?

- 아동이 관련된 성범죄
- 아동이 관련된 성추행
- 아동이 관련된 신체적 폭력
-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또는 심리적 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
- 심각한 아동 방치

18 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이 아동에 해당됩니다.

보고 대상 행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위원회 웹사이트 [About the Reportable Conduct Scheme](#)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이 제도는 특정 조직에 종사하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직원
- 자원봉사자
- 일부 계약자
- 사무직 근로자
- 종교 성직자
- 종교 단체 임원

해당되는 조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위원회 웹사이트 [For organisation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조직의 책임자는 본 제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조직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위치일 수 있습니다.

- 최고 경영자
- 조직의 교장
- 빅토리아주 정부 부서일 경우,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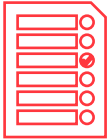

만일 조직에 최고 경영자, 교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 조직은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지명을 위한 양식은 위원회 웹사이트 [Nominating a head of organisation](#) 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의 책임자는:

-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 조직이 불만이나 혐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조직의 책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통지	혐의를 인지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진행자가 누구인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혐의를 인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세한 업데이트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결과 도출	조사의 결과, 조직이 수행할 다음 절차 및 그 이유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의 대표가 **3 일의 영업일과 달력 기준 30 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조직 책임자의 책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처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 8601 5281
- 이메일: contact@ccyp.vic.gov.au

본 위원회 웹사이트 www.ccyp.vic.gov.au 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통번역서비스 13 14 50 으로 전화하셔서 아동 및 청소년 위원회 03 8601 5281 번으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